

## 제2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부속정관 제10조와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부속정관 제13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당사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KSD)의 사전 일괄위임을 기준으로 당사 KDR 보유자 분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본 공지의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등을 검토하신 후, 첨부서류로 드리는 의결권행사신청서를 참고하시어 2022년 3월 22일 18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2. 장 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 1)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 나. 영업보고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보고
  - 2) 의결사항
    - 제 1호 의안: 제23기 (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부속정관(Bylaws)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 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노문종 재선임 승인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인 신규선임 승인의 건
    -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기타사항

- 1) 부속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는 총회 소집공고에서 지정한 한국 내의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 2) 당사 KDR은 당사의 보통주식을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으로, 당사 KDR의 취급 등은 당사와 KSD간의 예탁계약서에 기준합니다. 당해 예탁계약서는 KSD 글로벌서비스부 및 KSD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계약서 제1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원주식 1주 미만인 KDR 4증권 이하 보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일한 근거로, 1주당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신 KDR 중 원주식 1 : KDR 5의 비율로 환산시 원주식 1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4) 예탁계약서 제 34조 및 KSD의 사전 일괄위임에 의거하여 KDR 실질보유자는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 ② KSD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를 신청
  - ③ ②의 경우, 동봉한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찬반을 표시한 후 2022년 3월 22일 (화요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기간 내에 서면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신분증

6. 본 주주총회에 관한 보고사항, 의안 및 결산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코오롱티슈진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성수, 노문중 (직인생략)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아래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공시될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재 무 상 태 표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2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Kolon TissueGene, Inc.

(단위: USD)

과 목	제 23 기 말	제 22 기 말
자산		
Ⅰ. 유동자산	36,650,308	57,917,520
현금및현금성자산	32,739,992	17,023,998
단기금융상품	168,727	34,75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8,543	600,585
재고자산	143,885	313,966
당기법인세자산	254	20
기타유동자산	3,308,907	5,228,951
Ⅱ. 비유동자산	15,141,742	9,029,719
유형자산	2,305,313	2,377,678
사용권자산	5,240,313	6,016,125
무형자산	5,054,870	255,145
기타금융자산	-	60,500
기타비유동자산	2,521,598	281,332
순확정급여자산	19,648	38,939
자산총계	51,792,050	66,947,239

과 목	제 23 기말	제 22 기말
부채		
I. 유동부채	13,616,963	13,967,9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724,973	7,631,597
유동리스부채	552,440	631,416
단기차입금	-	5,000,000
기타유동부채	316,253	602,896
총당부채	23,297	102,071
II. 비유동부채	5,574,724	8,762,102
비유동리스부채	5,548,575	6,109,529
장기차입금	-	2,500,000
기타비유동부채	26,149	152,573
부채총계	19,191,687	22,730,082
자본		
자본금	2,471	2,399
자본잉여금	286,449,021	256,541,29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6,121)	(155,007)
결손금	(253,675,008)	(212,171,527)
자본총계	32,600,363	44,217,157
부채및자본총계	51,792,050	66,947,23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2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USD)

과 목	제 23 기	제 22 기
I. 매출액	3,497,973	3,013,298
II. 매출원가	(3,114,999)	(2,693,885)
III. 매출총이익	382,974	319,413

과 목	제 23 기	제 22 기
판매비와관리비	(41,367,009)	(35,535,130)
IV. 영업손실	(40,984,035)	(35,215,717)
기타수익	301,503	175,884
기타비용	(224,276)	(302,800)
금융수익	113,324	742,828
금융원가	(407,592)	(707,81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41,201,076)	(35,307,618)
법인세비용	(190,726)	(104,811)
VI. 당기순손실	(41,391,802)	(35,412,429)
VII. 기타포괄(손)익	(132,793)	25,73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실	(21,114)	(17,611)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1,679)	43,343
VIII. 총포괄손실	(41,524,595)	(35,386,697)
IX.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실	(3.38)	(2.90)
희석주당손실	(3.38)	(2.90)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2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USD)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결손금	총 계
2020년 1월 1일 (전기초)	2,399	256,540,169	(137,396)	(176,802,440)	79,602,732
당기순손실	-	-	-	(35,412,429)	(35,412,4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3,343	43,343
해외사업환산손익	-	-	(17,611)	-	(17,611)
총포괄손익	-	-	(17,611)	(35,369,086)	(35,386,697)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결손금	총 계
주식보상비용	-	1,123	-	-	1,123
2020년 12월 31일 (전기말)	2,399	256,541,292	(155,007)	(212,171,527)	44,217,157
2021년 1월 1일 (당기초)	2,399	256,541,292	(155,007)	(212,171,527)	44,217,157
당기순손실	-	-	-	(41,391,802)	(41,391,802)
유상증자	72	29,907,729	-	-	29,907,80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1,679)	(111,679)
해외사업환산손익	-	-	(21,114)	-	(21,114)
총포괄손익	72	29,907,729	(21,114)	(41,503,481)	(11,616,794)
2021년 12월 31일 (당기말)	2,471	286,449,021	(176,121)	(253,675,008)	32,600,36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2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USD)

과 목	제 23 기	제 22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132,023)	(32,308,157)
1. 당기순손실	(41,391,802)	(35,412,429)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175,726	2,378,900
이자비용	407,592	707,813
감가상각비	524,371	512,127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754,145	803,635
무형자산상각비	76,633	76,089
주식보상비용	-	1,123
퇴직급여	93,624	131,239
대손상각비(환입)	(94,078)	(76,119)
기타의대손상각비	172,699	468
유형자산처분손실	1,019	-
유형자산폐기손실	12,169	-
리스자산해지손실	-	28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962)	(166,505)
재고자산폐기손실	40,788	241,904
법인세비용	190,726	104,811

과 목	제 23 기	제 22 기
외화환산손실	-	42,027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70,288)	(743,252)
이자수익	(113,324)	(742,828)
유형자산처분이익	(199)	(424)
리스자산해지이익	(537)	-
외화환산이익	(56,228)	-
4. 순운전자본 변동	4,178,322	680,816
매출채권	300,211	285,432
기타채권(유동)	(111,241)	1,875,761
재고자산	108,709	52,319
기타유동자산	1,818,884	(3,706,839)
기타비유동자산	(2,010,598)	1,198,414
당기법인세자산	(190,961)	(114,029)
매입채무	(132,474)	(185,464)
기타채무(유동)	5,357,749	1,121,997
기타채무(비유동)	62,632	-
기타유동부채	(759,898)	348,296
기타비유동부채	(16,043)	-
확정급여채무	(183,954)	(195,033)
충당부채	(64,694)	(38)
5. 이자수취	180,703	1,104,836
6. 이자지급	(104,684)	(317,02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252,638	15,853,23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803,355	51,437,239
유형자산의 처분	222	-
대여금의 회수	60,500	13,48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5,742,633	51,423,75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550,717)	(35,584,00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61,360)	(34,750,000)
유형자산의 취득	(478,876)	(700,597)
무형자산의 취득	(4,883,663)	(10,939)
보증금의 상환	(26,818)	(108,470)

과 목	제 23 기	제 22 기
대여금의 대여	-	(14,00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590,932	(5,833,91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9,907,801	-
유상증자	29,907,801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316,869)	(5,833,912)
단기차입금 상환	(7,500,000)	(5,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816,869)	(833,912)
IV. 외화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447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I+II+III+IV)	15,715,994	(22,288,83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023,998	39,312,83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739,992	17,023,998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2.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 주식	제3조. 주식	납입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 ...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경우, 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본 제3조 제(3)항과 반대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경우, <b>회사는 전액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b> , 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본 제3조 제(3)항과 반대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제3조. 주식  (4) ... 이사회는 현금, 유무형자산이나 혜택 혹은 이를 결합한 형태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회사가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납입되어 불입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주식  (4) ... 이사회는 현금, 유무형자산이나 혜택 혹은 이를 결합한 형태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b>단,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는 현물출자(즉, 현금 이외의 것)로 납입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회사로 하여금 가치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검토한 후, 가치평가에 명확한 문제점이 없는 한 해당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b>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회사가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납입되어 불입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물출자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제3조. 주식  (5)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주 발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1) 단주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2) 단주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결정되는 때에 그 공정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3) 모두 함하여 하나의 완전한 주식 이 되는 스크립트(script) 또는 워런트(warrant)가 명도되는 때에 주주가 완전한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기명식(증서로 표창되거나 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또는 무기명식(증서로 표창됨) 스크립트 또는 워런트를 발행한다.	제3조. 주식  (5)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주 발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b>단,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없다.</b> 단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1) 단주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2) 단주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결정되는 때에 그 공정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3) 모두 함하여 하나의 완전한 주식 이 되는 스크립트(script) 또는 워런트(warrant)가 명도되는 때에 주주가 완전한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기명식(증서로 표창되거나 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또는 무기명식(증서로 표창됨) 스크립트 또는 워런트를 발행한다.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함
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  c.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들의 초과반수(이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  c. 관련 델라웨어 법률 <b>및 회사의 설립증서 제8절 및 본 부속정관</b> 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들의 초과반수(이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함.
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	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	한국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초과반수) 요건을 명확하게 반영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d. 부속정관의 목적상 “ 초과반수” 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 초과반수” 는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d. 부속정관의 목적상 “ 초과반수” 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 초과반수” 는 (i)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ii)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제6조. 주식의 환매; 자기주식; 주식의 소각  (2)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진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 증서(해당 되는 경우에 따름)를 취득할 수 있다.	제6조. 주식의 환매; 자기주식; 주식의 소각  (2)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진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 증서(해당 되는 경우에 따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자사주(DR)를 직접 또는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c.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및 그 관계회사(상법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를 말한다)의 직원,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c. 본 제7조 제(2)항의 다른 규정을 충족함을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및 그 관계회사(상법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를 말한다)의 직원,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요건 및 기타 관련 요건간 동시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함.
제13조. 소집통지  1. ...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이하를 보유한 주주 중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목적 및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안을 기재하여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인 수단(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통지 포함)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통지  1. ...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이하를 보유한 주주 중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목적 및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안을 기재하여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인 수단(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통지 포함)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한국 상법상 허용되는 소집통지 방식을 추가 기재함.
제18조. 이사  2. 이사의 수  d.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각각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단,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 권한이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주주에게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치 또는 사항(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제외)을 승인, 채택하거나 주주에게 권고하는 일, (ii) 회사 내규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	제18조. 이사  2. 이사의 수  d.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각각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단,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 권한이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주주에게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치 또는 사항(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제외)을 승인, 채택하거나 주주에게 권고하는 일, (ii) 회사 내규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 (iii) 소위원회의	한국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 관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반영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b>설립 및 위원회 구성원의 선출 또는 해임, (iv)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사항...</b>	
<p>제18조. 이사</p> <p>2. 이사의 수</p> <p>e. 제19조 제6항에서 정하는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는 사외이사로 하기로 한다.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i) 독립한 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 (ii) 회사의 외부 감사법인의 해임 및 (iii) 회사의 외부 감사법인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외부감사법인의 선임.</p>	<p>제18조. 이사</p> <p>2. 이사의 수</p> <p>e. 제19조 제6항에서 정하는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는 사외이사로 하기로 한다. <b>사외이사의 수가 2/3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b>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i) <b>독립적인 외부</b> 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 <b>외부 감사인</b>”)으로 선정, (ii) 회사의 외부 감사법인의 해임 및 (iii) 회사의 외부 감사법인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외부감사법인의 선임.</p>	<p>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규정(상법 542조의11) 내용을 추가함.</p>
<p>제18조. 이사</p> <p>5. 사임</p> <p>이사는 회사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그러한 사임은 사임 통지에 보다 추후의 효력발생일이 기재되거나 해당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사임 통지가 교부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사임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제18조. 이사</p> <p>5. 사임</p> <p>이사는 회사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b>(삭제)</b>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사임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b>단,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이사의 사임에는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b></p>	<p>사외이사 사임 또는 이사의 사임으로 정족수 미만의 이사가 발생하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의무가 유지되는 한국 상법상의 범위 도입</p>
<p>제19조. 임원</p> <p>2. 해임 및 사임</p> <p>임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임원은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해당 임원의 사임은 당해 통지의 수령일 또는 통지에 명시된 시점에 발효된다. 임원의 해임이나 사임은 당해 임원이 당사자인 여하한 고용계약에 의한 당해 임원 또는 회사의 권리(해당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 임원</p> <p>2. 해임 및 사임</p> <p><b>(감사 이외의)</b> 임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임원은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해당 임원의 사임은 당해 통지의 수령일 또는 통지에 명시된 시점에 발효된다. 임원의 해임이나 사임은 당해 임원이 당사자인 여하한 고용계약에 의한 당해 임원 또는 회사의 권리(해당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p>	<p>한국 상법에 의거,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어야 함.</p>
<p>제19조. 임원</p> <p>7. 보수</p>	<p>제19조. 임원</p> <p>7. 보수</p>	<p>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감사를 제외한 회사의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른 보수를 수령한다.	<b>이사 또는</b> 감사를 제외한 회사의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 <b>또는 이사회가 채택한 내부 규정에 따라</b> 결정되는 보수를 수령한다.	

※ 기타 참고사항

당해 정보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용에 참고 바랍니다.

### 3.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노문중	1968-03	-	-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김정인	1978-09	-	-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노문중	現 Kolon TissueGene, Inc. CEO	'05년~'19년 '19년~ 현재	- Kolon TissueGene, Inc. VP of R&D - Kolon TissueGene, Inc. 대표이사	없음
김정인	現 Kolon TissueGene, Inc. CFO	'13년~'21년 '22년~ 현재	- (주)코오롱 경영관리실 수석 - Kolon TissueGene, Inc. CFO 및 한국지점 지점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노문중	해당사항 없음		
김정인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노문중 사내이사 후보자

TG-C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미국 임상 1상, 2상을 총괄한 경험을 활용하여 미국 3상 및 상업화 과정을 총괄할 수 있어 추천함

- 김정인 사내이사 후보자

한국공인회계사(KICPA)로서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과 회계, 재무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여 향후 당사의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추천함

확인서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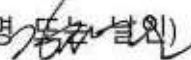
보고자 : Moon Jang Nak (서명 또는 날인)

노문종 대표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고자 : 김정인 (서명 )

김정인 cfo

#### 4.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제24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D 3,000,000

(전 기 - 제23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D 691,773
최고한도액	USD 3,000,000

※ 기타 참고사항

제23기 실제지급된 보수총액에는 중도 사임한 이사의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24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D 500,000

(전 기 - 제23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D 100,000
최고한도액	USD 500,000